

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안

의안 번호	제4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12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법원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소재지를 삼입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○ 법원도서관 위치 삼입 (조례 제2조 3호)

3. 법원도서관 : 법원읍 법원리 417-2, 417-3, 417-4

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원도서관 : 법원읍 법원리 417-2, 417-3, 417-4번지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,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치) 각 도서관의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현행과같음)
1. 금촌도서관 : 금촌동 780-1번지	1. (현행과같음)
2. 문산도서관 : 문산읍 문산리 35 -13번지	2. (현행과같음)
(신설)	3. 법원도서관 : 법원읍 법원리 417-2, 417-3, 417-4번지